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4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김지훈(국)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를 명확히 하며,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에치금의 보증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안 제9조제1항)
-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명확화(안 제11조)
- 안전관리에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안 제17조제2항제2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안 제33조제1항제3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맞게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행 규정화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잦은 조례의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안전관리에치금 보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건축 사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금번 개정으로 일부 조문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5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김상수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보행환경 관련 주요계획 수립·변경 시 기본계획 반영 의무화(안 제6조제4항)
- 용어 정비를 통한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안 제13조제2항)
- 보행환경개선사업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제6호 ~ 제8호까지)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6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4. 7. / 박경원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심의 시행을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기능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및 안 제13조의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통합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의2와 3에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43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 외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체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동 산105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지금동 산 1050-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근린공원 신설(A=151,036㎡)
- 제 안 자 : 남양주시장(미래도시과)

○ 주요 입안 내용

-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449	근린공원	근린공원	지금동 산1050-1번지 일원	151,036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49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151,036㎡	•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 외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체녹지를 조성

○ 추진현황

- 2025. 6.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요청
- 2025. 6. ~ 2026. 3. : 관련부서 협의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25. 8. 28. ~ 9. 11. :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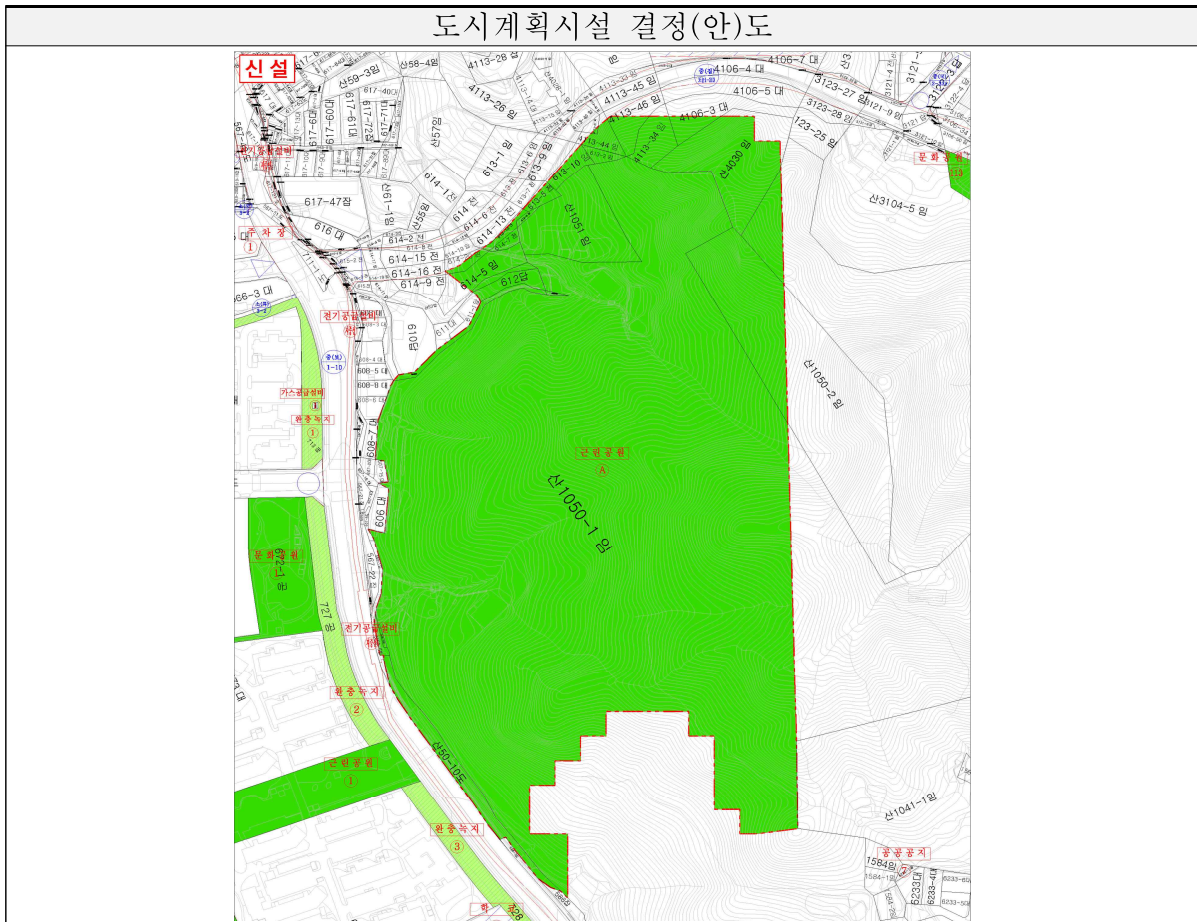
○ 향후 추진계획

- 2026.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6.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관련자료

위치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황금산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지금동 산1050-1번지 일원 151,036㎡에 황토길 조성, 광장, 공공야영장, 배드민턴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근린공원의 위치는 이미 2018년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린공원의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준공 계획 연도인 2029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35년 남양주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44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남양주시 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과 업 명 :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5년, 목표연도 2035년

- 공간적 범위 : 남양주시 전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과업내용

-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기초 조사

-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부문별 수립 방안
- 계약금액 : 금197,320,000원
- 계약자 :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과업기간 : 2025. 4. 11. ~ 2026. 5. 10.
- 그간 추진 현황
 - 2025.04.08. : 용역계약체결
 - 2025.04.11. : 용역착수
 - 2025.04.16. : 선금 지급완료 (금138,124천원)
 - 2026.02.11. : 기본계획(안) 수립
 - 2026.03.19. ~ 04.03. :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 향후 추진 계획
 - 2026.05.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06.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07. : 기본계획 고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주택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계획의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 2035년을 기준으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리모델링 수요예측을 통하여 기반시설 영향성 검토를 도출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과거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가진 물리적·환경적 한계 등을 극복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수요 관리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 행정절차의 수립 시기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45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 추진 필요성

- 법률에 따른 수탁 대상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조사, 통행량 및 통학 동선 조사,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도면 작성 등

○ 위탁시설 개요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14개소 (통합·중복 제외)

구분	합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개소수[개]	114	104	7	3
총연장[m]	62,245	60,250	1,635	360
평균연장[m/개]	546	579	233	120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수탁기관 선정방식

수탁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

수탁방법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관련법률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 생략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제외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소요비용 : 약 280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 2026. 3. 17. 도비 보조금 최종 확정 및 교부 결정 통보(경기도)

산출근거 : 총연장 62km × 4.5백만원/1km = 약 280백만원

*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배포 2026년 원가산출 내역서 기준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접조사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장조사, 도면 작성, 개선안 수립,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접 수행은 어렵고, ○ 일반용역사보다는 관련지침을 수립·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결과 도출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위탁비용은 관련지침에 따른 과업범위에 적합하게 수립된 경찰청 표준원가계산에 근거하고, ○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수행했던 기관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 결과물 도출 및 효율성 증가 기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써 교통 안전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관련지침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내실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하고, ○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연계지표로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최종 평가 수행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도·점검)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 수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2024년부터 우리 시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한 기관이자, 실태조사 지침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일반용역사나 타 교통전문기관 보다 양질의 결과 도출 가능
총 합 의 견	'24년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된 초기단계로, 일반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계획

2026. 5.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국도로교통공단 협약안 협의 및 변호사 자문결과 반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위탁 업무는 관내 보호구역 114개소 총 연장 62,245미터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도면화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이는 우리 시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매년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사무의 경우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2호에 따라 의회 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46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5B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인구·주택 수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위 치 :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
- 지구면적 : 630,693.8m²
- 세 대 수 : 9,970세대(25,821인)
- 추진현황
 - 2007. 11. 26.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 2010. 08. 02.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최초)

○ 덕소5B구역 현황

- 위 치 : 와부읍 덕소리 483번지 일원
- 구역면적 : 19,439.0m²
- 세 대 수 : 537세대
- 추진현황

- 2012. 10. 25. : 조합설립인가
- 2016. 12. 22. :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남·고 제2016-340호]
- 2021. 08. 17. : 사업시행계획인가[남·고 제2021-336호]
- 2023. 09. 07. : 관리처분계획인가[남·고 제2023-352호]
- 2024. 08. 29. :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남·고 제2024-390호]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내용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 반영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2016.5.12., 제1355호)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제2016-340호)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2025.5.8., 제2485호) - 금회 신청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도로폭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 오피스텔(업무시설) 삭제, 공동주택·판매시설 면적비율 등 건축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구역면적	19,439.0㎡	-	19,439.0㎡
대지 면적	11,214.0㎡	-	11,214.0㎡
건축물의 규모	지하 5층 ~ 지상 45층	-	지하 6층 ~ 지상 45층
건폐율	36.54%(법정 80%이하)	감) 0.71%	35.83%(법정 80%이하)
용적률	649.99%(법정 650%이하)	-	649.99%(법정 650%이하)
연면적	109,374.2579㎡	증) 7,209.4㎡	116,583.6582㎡
공동주택	87,485.4716㎡ / 79.99%	증) 17,432.4636	104,917.9352㎡ / 89.99%
판매시설	5,577.3793㎡ / 5.10%	증) 6,088.8837	11,666.2630㎡ / 10.01%
업무시설 (오피스텔 120호)	16,311.4070㎡ / 14.9%	감) 16,311.4070㎡	오피스텔 삭제
계획세대수	537세대	증) 101	638세대
40㎡이하(임대)	14세대 / 의무임대	증) 2	16세대 / 의무임대
40㎡~60㎡	122세대	증) 88	210세대
60㎡~85㎡	323세대	증) 84	407세대
85㎡초과	78세대	감) 73	5세대

그간 추진 사항

- 2025. 12. 02.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요청
 - 2025. 11. 02. 조합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 242명 중 208명(약 85%) 동의하여 의결
- 2025. 12. ~ : 관계기관(부서) 협의

향후 추진계획

- 2026. 4. 9. ~ 4. 2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서류 주민공람
- 2026. 4. : 의회 의견청취
- 2026. 5. : 주민공청회
- 2026.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7.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2025년 5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인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조정함에 따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 5B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공동주택 연면적을 당초 79.9%에서 89.9%로 증가시켰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120호를 계획하였으나 삭제하여 주택 세대수 당초 537세대에서 약 18.8% 증가시킨 638세대로 조정하였음
본 변경안은 최근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요가 불투명한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중·소 평형 위주로 세대수를 확충하여 분양위험을 낮추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현재 주민 공람이 4월 24일까지 진행 중으로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남
다만, 전체 조합원의 85%가 변경 수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에 다수 주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는 향후 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의안번호
947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왕숙신도시 및 진접2공공주택지구 조성 중 하수관로 설치가 왕숙천 내 계획되었고 남양주시의 기존 차집관로에 대한 개량 계획과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통합 차집관로 사업이 논의됨
 - 통합 차집관로 설치 시 일원화된 하수관로로 인해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공사 중 하천 내 이중공사 및 예산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통합 차집관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와의 협의 중에 있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LH와 협의하여 2027년 절대공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회 안건으로 상정함
 - 향후, 의회 동의 절차 후 LH와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왕숙신도시 및 진접2공공주택지구의 최초 입주 전 준공

을 위해 LH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함

3. 협약 내용

- 협약명칭 :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차집관로 개선사업 협약
- 협약기관 :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협약내용 :
 - 처리구역 내 기존 발생하수와 왕숙신도시 및 진접2공공주택지구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의 업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
- (남양주시) 통합 차집관로 개선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 분담, 시공
- (LH) 사업비 분담, 미보상 토지 보상

4. 추진실적

- 2025. 6. 25. : 협약안(2차) 검토의견 회신요청(市 → LH)
- 2025. 7. 4. : 협약안(2차) 검토의견 회신(LH → 市)
- 2026. 2. 6. : 설계 경제성 검토(VE) 완수
- 2026. 2. 13. : 협약안 용어변경 검토의견 회신요청(市 → LH)
- 2026. 3. 19. : 설계 안전성 검토 완수
- 2026. 3. 23.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신청

5. 추진계획

- 2026. 4. ~ 5. : 협약 체결(市 ↔ LH)
- 2026. 하반기. : 공사 착공
- 2027. 하반기. : 공사 준공

6.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협약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LH와 협약체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사업명과 범위는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진접2지구 최초 하수 유입부부터 진건푸른물센터까지 약 8.1km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가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분담, 시공을 맡고, LH는 사업비 분담과 토지 보상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총 8개조로 구성된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하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동 투자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며 왕숙 및 진접2 공공택지 지구 최초 입주 전인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봄

7.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8. 토론요지 : 없 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7

2026. 4.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조명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사고 위험 구간의 조명 기준을 보완하여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조명시설 관련 용어 정의 정비 및 신설 (안 제2조)
- 상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례 명칭 정비 (안 제3조, 제18조)
- 조명 등급 산정 방식 최신화, 횡단보도 수직면 조도 기준 강화 및 상충구역 조명 기준 신설 (안 제6조)
- 최신 LED 조명기구 한국산업표준(KS) 반영 (안 제9조)
- 별표 및 별지 서식 개편:
 - 등급 산정표 수식 교정, 독소조항 삭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로 조명 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전임
-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교통량과 속도 등에 대한 가중치 방식을 부여하여 도로 현장 여건에 맞는 조명 등급을 정하였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직면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식별을 용이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는 KS표준 방수·방진 성능을 갖춘 조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이제까지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의 정비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시설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짐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